

## 소장

원고 김정민(840704-\*\*\*\*\*)  
서울 마포구  
(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dearmothermusic@gmail.com](mailto:dearmothermusic@gmail.com) )

피고 주식회사 백화점(211-87-\*\*\*\*\*)  
서울 강남구  
공동대표이사

### 손해배상(저)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일천만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브런치에 게시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작권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본 게시물을 보시고, 임의의 매체 및 저작권법 관련 강연 등에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본 브런치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 개인의 정보가 있어 보다 정확하게 소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dearmothermusic@gmail.com](mailto:dearmothermusic@gmail.com))

## 소장

원고 김정민

서울시 마포구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dearmothermusic@gmail.com](mailto:dearmothermusic@gmail.com)

피고 주식회사 백화점(211-8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이사

휴대전화번호: 010 (담당자 :

전자우편주소: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일천만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브런치에 게시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법에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대해 잘 모르는 저작권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본 게시물을 보시고, 임의의 매체 및 저작권법 관련 강연 등에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본 브런치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 개인의 정보가 있어 보다 정확하게 소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dearmothermusic@gmail.com](mailto:dearmothermusic@gmail.com))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어문저작물인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합니다.)를 창작한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유통, 패션, 식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사의 영업 및 홍보에 ‘이 사건 저작물’ 본문 문구 전체를 원고의 동의 및 출처 기입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회사입니다.

### 2. 사실관계

#### 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창작 및 사용 경과

- (1) 원고는 만 15세인 2000년부터 대한민국 예술고등학교(안양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 예술대학(서울예술대학 디지털아트과)에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 작품으로 창작하고 완성시키는 것을 교과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원고는 2006. 2.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꾸준히 영상작업을 하며 창작자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갑 제1호증).
- (2) 2008년에는 싱어송라이터로 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기 위해 동료 멤버인 소외 오 (현재 프랑스 파리 거주)과 함께 1984(팀명 ‘일구팔사’)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20대 시절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노래로 구성된 음반 발매를 위해 1년여 동안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작곡, 작사, 편곡을 배워나가며 작업에 몰입했습니다(갑 제2호증).

음반작업 중,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과 감정을 ‘현실적인 성취를 위해 청춘이라는 시기에 누릴 수 있는 감성적 가치를 포기하는 또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는 의미로 이 사건 저작물인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를 창작했습니다.

- (3) 그 후 약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2009. 4.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과 총 17어 절인 ‘이 사건 저작물을 보다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구’인 <청춘집중>이라는 문구를 합쳐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제목의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고 합니다.)을 발매했습니다.
- (4) 음반 제작 당시 음반관계자는 이 사건 저작물이 이 사건 음반의 홍보 및 영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① 캘리그라피로 유명한 광고감독 백 (갑 제3호증의1)이 직접 썼고, ② 음반 곁면에도 별도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며, ③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명시하여 배포했습니다(갑 제3호증의2).
- (5)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5곡은 원고가 단독으로 작사했으며, 작곡은 원고와 소외 오 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음반 발매에 맞춰 원고는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자로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음반 역시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 저작물로 등록되었으며(회원번호: W0923200, 자격 :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이 사건 음반은 CD 및 디지털음원 상품으로 제작되어 판매도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 (6) 나아가 원고는 2009. 6. 유상 판매되는 문학계간지(문학동네 청소년 계간지 <풋>, 2009년 여름호 제13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제목으로 하여 칼럼을 발표했습니다.(갑 제5호증의1) 당시 출판사의 청탁으로 기고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심사를 통해 어문저작물(등록번호: C-2017-018843)로 등록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2).
- (7) 또한 원고는 2009. 9. KBS라디오 <유희열의 라디오천국>에서 ①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게 된 계기 및 앨범 내 구현방법(갑 제6호증의1/ 녹취록 9-10쪽), ② 해당 음반을 작업한 방식을 매우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1/ 녹취록 5-6쪽, 녹취록 13-14쪽). 해당 방송이 녹음된 오디오 파일도 함께 제출합니다(갑 제6호증의2).
- (8) 2011. 12.과 2012. 1.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강연에 명예교사로 초청받아 이 사건 저작물을 강연명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7호증의1) 본 강연은 예술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명예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20대의 멘토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당시 강연을 들

은 20대 청중은 “현실의 막막함을 많이 느꼈는데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 들을 듣다 보니 마음의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oL33jRELPQ> /갑 제7호증의2).

#### 나.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무단 사용

- (1) 피고는 2017. 4. 21.부터 2017. 6. 1.까지 피고 회사 2층 연결통로에 위치한 『팝스트리트』라는 상품 판매 공간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제작하여 저작자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였으며, 출처에 관하여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8호증).
- (2) 또한 피고는 2017. 4. 21. 영업홍보 목적으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자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출처에 관하여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목적이 ‘젊은 청춘을 응원하기 위함’에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보도자료는 총 5개의 언론(경제지)을 통하여 기사화되었습니다(갑 제9호증).

#### 다. 이후의 경과

-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터넷뉴스 보도로 알게 되었으며, 알게 된 직 후 피고 회사 측 법무팀을 통해 담당자 윤 주임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6. 9. 내용증명(갑 제10호증의1)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이 후 피고 측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진행 후, 추가로 2017. 7. 10. 창작자 입장문(갑 제10호증의2)을 이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 (3) 하지만 피고는 2017. 7. 17.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 사건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의1). 이에 대해 원고는 2017. 7. 31.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고 측에 전달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의2).

- (4)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내용을 사건발생지인 한겨레신문 사회부 서대문구 지역 담당기자에게 제보하였으며, 관련내용이 2017. 8. 2. 한겨레신문 사회면 기사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2호증)

## 라.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출처에 관하여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브런치에 게시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작권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본 게시물을 보시고, 임의의 매체 및 저작권법 관련 강연 등에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본 브런치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 개인의 정보가 있어 보다 정확하게 소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dearmothermusic@gmail.com](mailto:dearmothermusic@gmail.com))

## 3. 위법행위에 대한 검토

### 가. 저작권법 위반의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을 회사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피고 회사에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별도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저작물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2)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먼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② 창작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2.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하여 이미 음반, 문학계간지 기고 원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강연 등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바를 복수의 창작물의 제호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요건인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이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에서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급심 판결에서 먼저 이른 바 ‘맥주광고’ 사건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단순한 내용으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며 보호할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어 저작권의 요건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판결),

또한 이른 바 ‘내가 제일 잘나가’ 사건에서는 ‘내가 제일 잘나가’라는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써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

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7. 23. 자 2012카합995결정).

하지만 창작성이 부정된 판례에 의하더라도 ‘보호할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있다면, 간결한 문구라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제호의 경우에도 ‘완성된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그 표현이 독창적일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4)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인정 근거

##### (가) 최초발표

이 사건 음반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저작물인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표현을 발표하였거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 (나) 독창적인 형식 및 리듬감을 가진 표현에 해당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20대 시절 음반 발매를 위해 1년여 동안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작곡, 작사, 편곡을 스스로 배워나가며 작업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얻은 생각과 감정을 ‘현실적인 성취를 위해 청춘이라는 시기에 누릴 수 있는 감성적 가치를 포기하는 또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는 의미로 창작한 문장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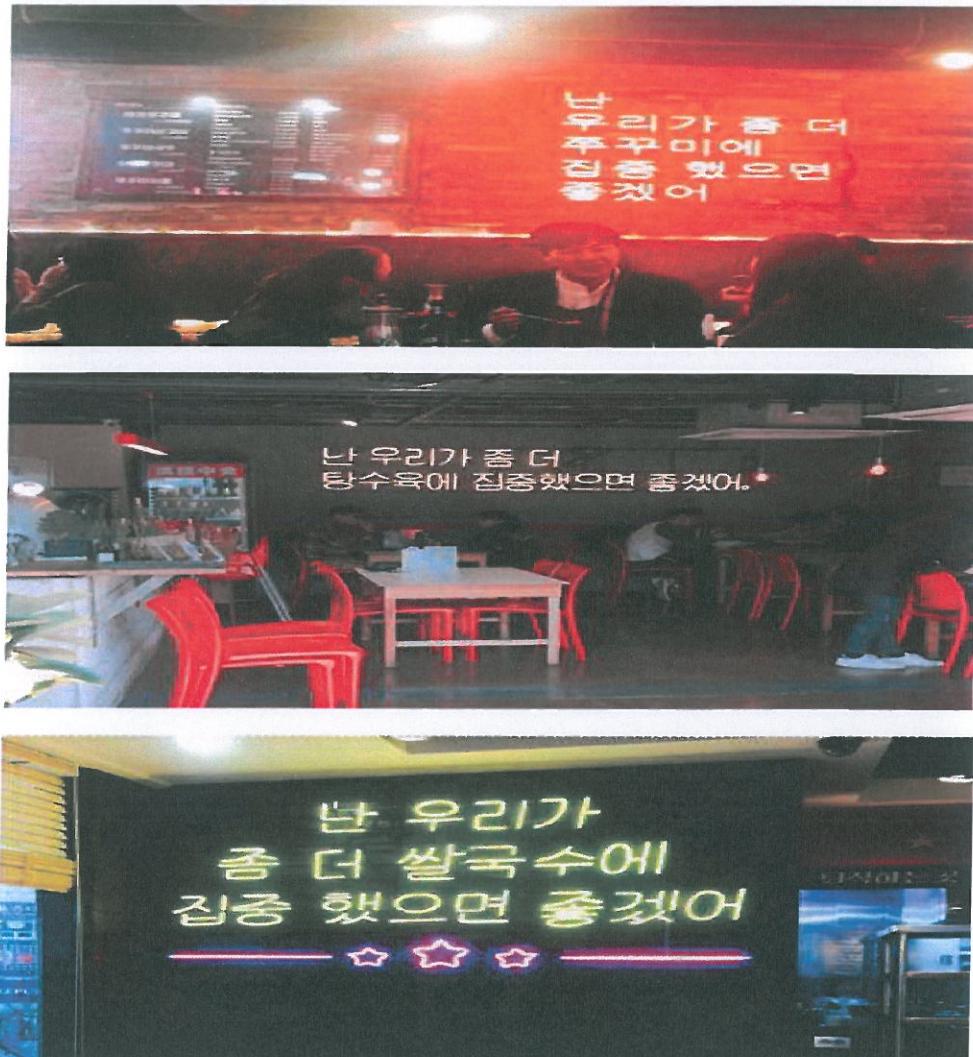
실제 음반발매 당시 2009. 9. KBS라디오 <유희열의 라디오천국>에서 원고가 라디오 진행자 유희열(가수 토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번호: W0206900, 자격 :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과 나눈 대화를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기 전에는 ‘청춘’과 ‘집중’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발음을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함께 사용한 사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 제6호증의1) 중 발췌]

- 유희열 : '청춘', '집중'이라는 말 참 두 단어가 안 어울리는 단어 중의 하나인데 두 단어가 잘 붙어있어요.
- 오수경 : 발음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 김정민 : 청춘집중.
- 유희열 : 이게 무슨 의미에서?
- 김정민 : 제가 예전부터 항상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치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이라는 이 시절에, 그리고 또 청춘이라는 내 삶의 태도에 좀 더 집중해서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유희열 : 아~ 그랬군요. 되게 멋진 뜻이구나. 누가 지은 거예요?
- 오수경 : 이 친구(김정민)가요.
- 유희열 : -웃음-
- 오수경 : 저는 주로 음악을 만들고 이 친구는 그 외에,
- 유희열 : 메시지나,
- 오수경 :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글 쓰고 이러는 것. 저는 잘 못쓰거든요. 글, 가사 이런 것.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문장으로 '패러디'<sup>1)</sup>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난 우리가 좀 더 ○○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표현이 그 자체로 독창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1) 패러디 : 익살·풍자 효과를 위하여 원작의 표현이나 문체를 자기 작품에 차용하는 형식. 문학·음악·미술 분야에서 그 형식을 볼 수 있다.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 차원이 아니고, 패러디의 대상이 된 작품과 패러디를 한 작품이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인기 작품의 자구(字句)를 변경시키거나 과장하여 익살 또는 풍자의 효과를 노린 경우가 많다. 때로는 악의가 개입되지만 여기서의 웃음의 정신은 문학의 본질적인 것이다. 원래 희랍어에서 나온 말로 '놀리는 노래'나 '파생적인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에 등장할 정도로 기원이 오래된 용어이다.(출처 :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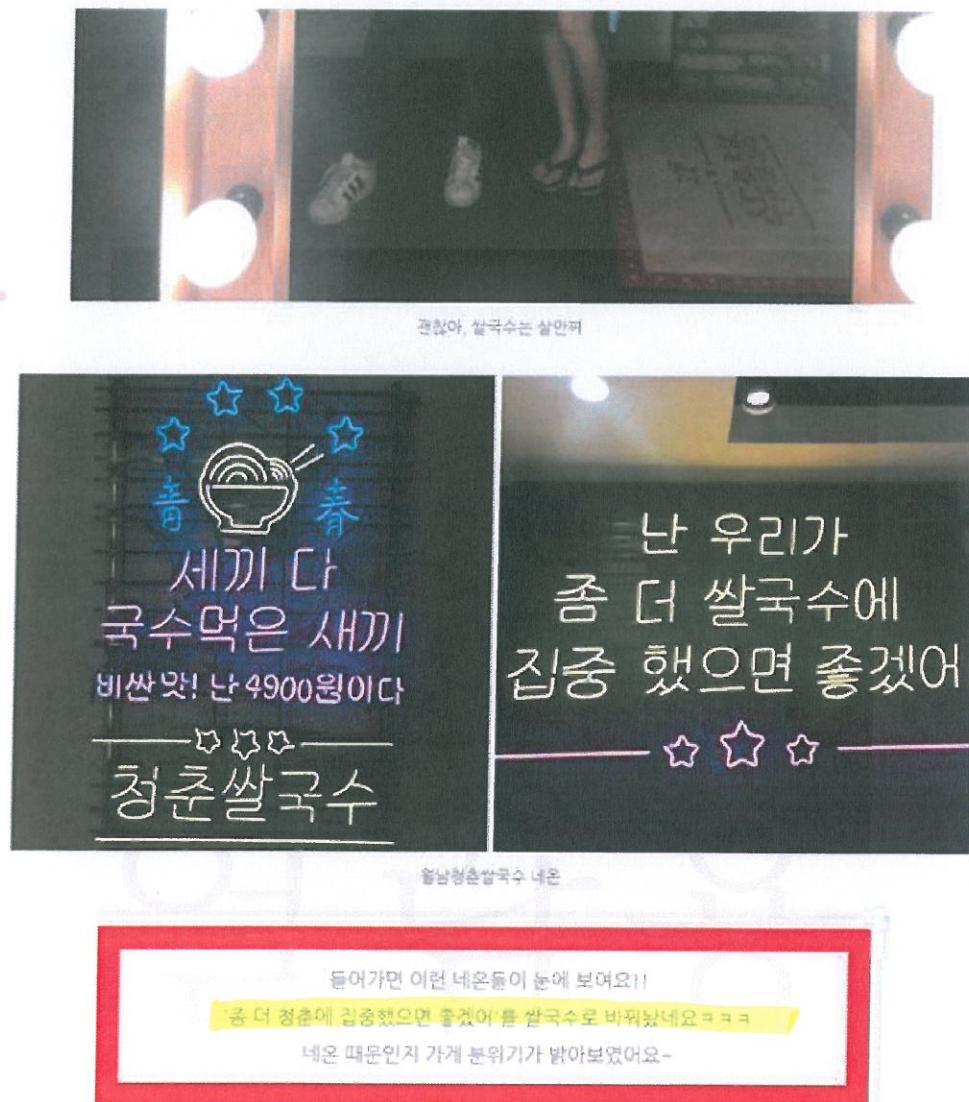


이 사건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운율(리듬감)’을 훼손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난’이 아닌 ‘나는’, ‘좀’이 아닌 ‘조금’, ‘더’가 아닌 ‘더욱’을 선택하여 문장을 구성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저작물’이 지난 창작물로서의 고유의 운율(리듬감)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패러디 된 문구를 보고 원문인 이 사건 저작물을 떠올리는 이의 의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저작물이 고유의 독창적인 형식, 리듬감이 없다면 발견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브런치에 게시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작권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본 게시물을 보시고, 임의의 매체 및 저작권법 관련 강연 등에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본 브런치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 개인의 정보가 있어 보다 정확하게 소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dearmothermusic@gmail.com](mailto:dearmothermusic@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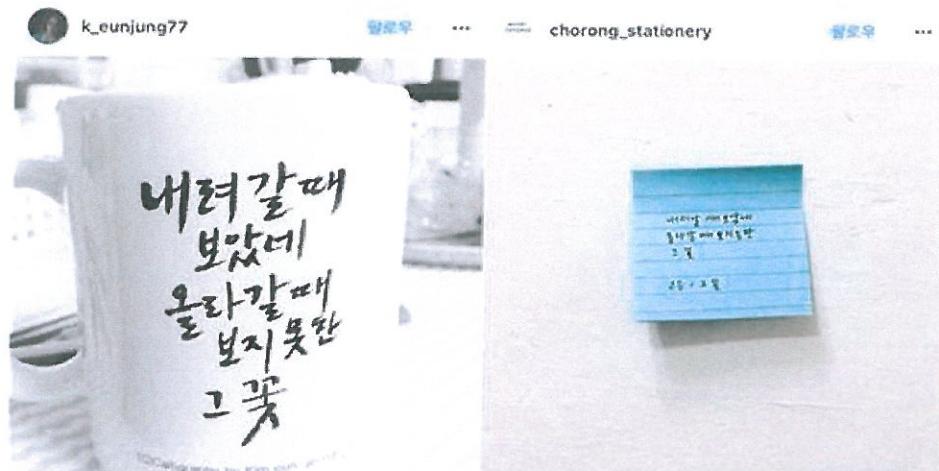
(※ 출처 : <http://blog.naver.com/gstdv0819/221058906703>)

#### (다) 문구의 분량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저작물은 총 7어절, 17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분량이 짧지 않으며, 또한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①고은 시인의 <그 꽃>, ②나태주 시인의 <묘비명>, ③일본의 정형시 ‘하이쿠’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과 유사한 분량으로도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충분히 담아낸 예술작품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① 고은 시인의 시 <그 꽃>은 9어절, 17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SNS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된 바 있습니다.



좋아요 2개  
k\_eunjung77 #울산캘리그라피#장한숙선생님감사해요#연습  
만이설같이다#제발증열심히해봐#고은#그꽃  
8월 11일

좋아요 49개  
chorong\_stationery #고은#그꽃#초등체  
ian\_lee22 요런 포스트잇에 적힌 글씨 너무 예뻐요!!!😍 펜지  
모르게 할링...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시집 <순간의 꽃> 中

② 또한 나태주 시인의 시 <묘비명>은 5언절, 13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SNS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되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나태주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中

③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이쿠’는 5·7·5의 17음(音)형식으로 된 일본 문학 정형 시입니다. 해학적이고 응축된 어휘로 인정(人情)과 사물의 기미(機微)를 재치 있게 표현하여 일본 시가문학의 커다란 장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이쿠’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로 인정 받아 2015. 4. 28.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환대하는 의미로 백악관에서 하이쿠를 읊기도 했습니다.

홍시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너도 젊었을 때는  
무척 뛰었다는 것을

<나쓰메 소세키> 하이쿠

그럴 가치도 없는  
세상 도처에  
벗꽃이 피네

<고바야시 잇사> 하이쿠

젊었을 때는  
벼룩 물린 자국도  
예뻤었지

<고바야시 잇사> 하이쿠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젠 없어

<야마다 요우> 하이쿠

일본의 하이쿠 역시 SNS 공간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lily\_y  
팔로우 ... my8602288  
팔로우 ...

홍시여, 이 사실을 잊지말게  
너도 젊었을 때는  
무척 뛰었다는 것을 - 소세키

좋아요 94개  
lily\_y 출처: http://m.blog.naver.com/jdphil

그럴 가치도  
없는 세상도 처에  
벗꽃이 피네

- 코바야시 이싸의  
하이쿠 -

좋아요 2개  
my8602288 #하이쿠  
#코바야시 이싸  
4월 19일

joarong83  
팔로우 ... icepiece  
팔로우 ...

걸었을 때는  
벼룩 물린 자국도  
예뻤었지

잇사

좋아요 23개  
joarong83 #호랑AR  
어려서부터 관리하라는 말을 새겨듣기엔  
이미 노처녀가 되어버렸지...

좋아요 45개  
icepiece 연상이 내 취향이네 이젠 없어  
야마다 요우(92세)  
할배의 하이쿠 중엔 다른 것도 있더라  
이 두근거림.  
예전엔 사랑.  
지금은 병.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저작물 역시 위 두 편의 시 및 하이쿠와 같은 방법으로 SNS에 활용되었습니다.



#### (라) 단문의 마케팅적 활용

한편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채널로 이용되며 실제로 위 두 편의 시 및 하이쿠와 같은 단문은 자신의 감성과 개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 8. 24.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블로그를 통해 “디지털 문화를 대표하는 SNS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지닌 시가 재조명받는 이유로,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감성과 느낌을 이미지와 짧은 문구 등으로 표현한다. 이때 짧은 시구를 사용하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SNS의 감성적인 시구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교감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SNS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시를 소개하며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낼 수도 있다.”며 SNS의 마케팅 효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갑 제13호증의1).

※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cienews/22108135592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개한 트렌드를 적용한 홍보 사례로는 tvN 예능프로그램 <알바트로스>(2017.09.13.~11.01.방영)의 홍보 목적으로 예산 집행된 #알바청춘 공감 단문시 이벤트(대학내일 광고 사례), <롯데시네마>의 홍보 목적으로 예산 집행된 페이스북 백일장(맥스무비 광고 사례)이 있습니다(갑 제13호증의2).

####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으로 저작권법 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위반의 점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음악, 문학, 강연 등 복수 창작물 제호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했습니다. 그 중 이 사건 저작물이 최초 창작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2008년 당시, 원고는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창작물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투자와 노력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로 인해 창작자로서의 원고의 명예 실추 및 이 사건 저작물의 개성 훼손 등 경제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자인 원고의 동의 및 출처 기입 없이 피고 회사 영업 및 홍보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해당합니다.

#### 4.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금 일천만원(10,0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5. 결 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자인 원고의 동의 및 출처 기입 없이 무단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 및 홍보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물 사용료, 홍보 효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브런치에 게시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작권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본 게시물을 보시고, 임의의 매체 및 저작권법 관련 강연 등에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본 브런치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 개인의 정보가 있어 보다 정확하게 소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dearmothermusic@gmail.com](mailto:dearmothermusic@gmail.com))

## 입증방법

- |                |   |
|----------------|---|
| 1. 갑 제1호증      | 01.갑 제1호증_졸업증명서                                 |
| 2. 갑 제2호증      | 02.갑 제2호증_2008년_원고_소득금액증명                       |
| 3. 갑 제3호증의 1   | 03.갑 제3호증의1_캘리그라피_백                             |
| 4. 갑 제3호증의 2   | 04.갑 제3호증의2_음반_스티커부착_캘리그라피                      |
| 5. 갑 제4호증      | 05.갑 제4호증_한국음악저작권협회_회원_저작물등록확인서                 |
| 6. 갑 제5호증의 1   | 06.갑 제5호증의1_문학계간지_풋_2009년여름호(제13호)              |
| 7. 갑 제5호증의 2   | 07.갑 제5호증의2_어문저작물_저작권등록증                        |
| 8. 갑 제6호증의 1   | 08.갑 제6호증의1_20090907_유희열의라디오천국_일요야설무대_1984출연_녹취 |
| 9. 갑 제7호증의 1   | 10.갑 제7호증의1_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_활동증명서                   |
| 10. 갑 제7호증의 2  | 11.갑 제7호증의2_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_활동_동영상_녹취               |
| 11. 갑 제8호증     | 12.갑 제8호증_ 백화점_- 팝스트리트_매장사진                     |
| 12. 갑 제9호증     | 13.갑 제9호증_ 백화점_이사건저작물_무단사용_기사                   |
| 13. 갑 제10호증의 1 | 14.갑 제10호증의1_20170609_김정민발송_내용증명                |
| 14. 갑 제10호증의 2 | 15.갑 제10호증의2_20170710_창작자입장문1                   |
| 15. 갑 제11호증의 1 | 16.갑 제11호증의1_20170717_ 백화점발송_내용증명               |
| 16. 갑 제11호증의 2 | 17.갑 제11호증의2_20170731_창작자입장문2                   |
| 17. 갑 제12호증    | 18.갑 제12호증_20170802_한겨레신문_사회면_관련기사              |
| 18. 갑 제13호증의 1 | 19.갑 제13호증의1_20170830_산업통상자원부_블로그_SNS가되살린시전성시대  |
| 19. 갑 제13호증의 2 | 20.갑 제13호증의2_타사_단문시_SNS_홍보예산_집행_사례              |

## 첨부서류

1. 피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고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